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육아돌봄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민석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등록·지정을 위한 인적기준에 따라 상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국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常勤)”을 “상근(常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기상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인력란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의 인력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근 기상 인력”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상 인력”으로 한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상근 수의사 1명 이상”을 “상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의사 1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근무”를 “상시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미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지정기준란 가목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인력의 강사인력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른」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로 한다.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
 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본문 중 “전문기술인력은 다른 기업”을 “전문기술인력은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서 다른 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본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 제2호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시 확보”를 “상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확보”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인력”을 “전문인력(「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가목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상근(常勤)”을 “상근(常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내용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상근인력”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u>상근</u>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추는 것	3. ----- ----- -- <u>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u>상근</u> 할 것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 ----- ----- ----- ----- -----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2. (생략)	3.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u>상시근무할 것</u>	<u>상시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u>상근</u>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3. ----- <u>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생략)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u>상근</u>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 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 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 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 차. (생략) 2. (생략) ⑤ (생략)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 <u>상근(「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u> - -----. ----- ----- -----. 가. ~ 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u>상시 근무할 것</u> 가.·나. (생략) 5.·6. (생략)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가.·나.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u>상근 전문인력</u> 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2. ----- ----- <u>상근</u> (「 <u>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요건) ①·② (생략)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 명 이상 <u>상근</u> 할 것 2. (생략)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u>상근(「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2. (현행과 같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전문인력</u> 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 다. (생략) 2. (생략) ② ~ ⑦ (생략)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 ----- ----- ----- -----. 1. ----- ----- <u>전문인력(「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8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28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730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6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69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4 - 7360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연 락 처	(042) 481 - 4048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148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55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5164